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
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목의 명칭을 정비하고 교육과목 간 이론 및 실습시간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현재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중 “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·재활”은 교육내용에 포함되는 신체 건강 관련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교육내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, 양성기관 교재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목 간 교육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과목 중 “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·재활”의 명칭을 교육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“치유농업을 통한 정신·신체 건강 및 재활”로 변경.(별표1)

나.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총 교육시간(124시간)은 유지하면서 교육과목 간 이론 및 실습시간의 배분을 다음과 같이 조정.(별표1)

· 이론시간 : 50시간 → 60시간

· 실습시간 : 74시간 → 64시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교육분야		교육과목	교육시간		
			계	이론	실습
1. 1급 치유농업사양성과정	가.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	1)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·신체 건강 및 재활	14	8	6
		2) 치유농업서비스 대상자의 중점관리	14	8	6
	나.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	1) 치유농업자원의 관리	10	6	4
		2)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	10	6	4
	다.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	1) 치유농업서비스 사업의 기획·관리	16	8	8
		2) 치유농업서비스 종사인력의 역량강화	16	8	8
	라.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	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심화	44	16	28
	소계		124	60	64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1]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 (제6조제6항 관련) 1. 1급 치유농업사양성과정 가.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1) 치유농업을 통한 <u>정신건강·재활</u> 총교육시간 <u>124시간(이론 50, 실습 74)</u> 가.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· 교육시간: <u>24시간(이론 12, 실습 12)</u> 나.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· 교육시간: <u>16시간(이론 8, 실습 8)</u> 다.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· 교육시간: <u>30시간(이론 12, 실습 18)</u>	[별표1]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 (제6조제6항 관련) 1. 1급 치유농업사양성과정 (현행과 같음) 1) 치유농업을 통한 <u>정신·신체 건강및재활</u> 총교육시간 <u>124시간(이론 60, 실습 64)</u> (현행과 같음) · 교육시간: <u>28시간(이론 16, 실습 12)</u> (현행과 같음) · 교육시간: <u>20시간(이론 12, 실습 8)</u> (현행과 같음) · 교육시간: <u>32시간(이론 16, 실습 16)</u>

라.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과 관리 • 교육시간: <u>54시간(이론 18, 실습 36)</u>	(현행과 같음) • 교육시간: <u>44시간(이론 16, 실습 28)</u>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	
연 락 처	(063) 238 - 1022